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립·운영 지원 등 국제협력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협력 담당인력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에 검역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및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19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2명)과 34명(6급 1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19명)은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20명, 9급 10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으로 의약품·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예정('24.1.18.)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12.1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고, 탄력적인 조직·인력 운용을 위해 직급별 복수직렬을 확대하고자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국립검역소의 서무과장·검역과장과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지소장에 간호사무관을, 질병관리청의 5급 복수직렬에 기록연구관을, 국립보건연구원의 7급 복수직렬에 사서주사보를 추가하고, 질병대응센터에 기계운영서기보 1명과 위생서기보 1명은 행정수요 감축에 따라 일반직 9급 복수직렬로 이체·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을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을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관할구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위치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81”을 “479”로 하고, 일반직 계 “480”을 “478”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7”을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6”으로 하고,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7”을 “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를 신설하며,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2”를 “21”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483”을 “481”로 하고, 일반직 계 “482”를 “48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7”을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6”으로 하고,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7”을 “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를 신설하며,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2”를 “2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0”을 각각 “208”로 하고,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1”을 “1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를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로 하고,

보건연구사 “89”를 “88”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2”를 각각 “21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1”을 “10”으로 하며, “행정주
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를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
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로 하고,
보건연구사 “89”를 “88”로 한다.

별표 8 중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4”를 “13”으로 하고, 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 보건서기 · 의료기술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21”을 “222”로 하며, 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9”를 “71”로
하고, “위생서기보 1”과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국립마산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118”을 각각 “116”으로 하고,
4급 이하 “117”을 “115”로 하며, 국립목포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98”을
각각 “97”로 하고, 4급 이하 “97”을 “96”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1) 및 2)를 삭제하고, 3)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3) 및 4)”를 “1) 및 2)”로 한다.

별표 12 제1호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1. 제3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수의사무관	1

2. 제32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2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 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 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전북 특별자치도’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마산병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과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질병대응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2조제7항 관련)

명칭	관할구역	관할검역소 (지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국립동해검역소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국립평택검역소 국립군산검역소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목포검역소 국립여수검역소 국립제주검역소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국립포항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국립부산검역소 국립마산검역소 국립김해공항검역소

[별표 3]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검역구역(제24조제1항 관련)

소 속	명 칭	위 치	검 역 항	검 역 구 역	
				수 역	육 역
국 립 인 천 공 항 검역소	국 립 인 천 공 항 검 역 소 김 포 공 항지소	서 울 특 별시	김 포 국 제공항		북위 37도33분, 동경 126도48분의 지점 (관제탑)으로부터 190도 진북방향 402미터 지점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남 북 출 입 사 무 소		북위 37도55분, 동경 126도42분의 지점으로부터 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부 산 검 역 소	국 립 부 산 검 역 소 신항 지소	부 산 광 역시	부 산 신 항	북위 35도04분39.4초, 동경 128도49분56.7초의 지점(신항1부두 동쪽 끝)으로부터 북위35도04분16.7초, 동경 128도49분56.6초의 지점(신항4부두 동쪽 끝)과 북위 35도04분39.0초, 동경 128도47분04.8초의 지점(신항3부두 서쪽 끝)으로부터 북위 35도03분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에서 북컨테이너부두지역 700미터, 남컨테이너부두지역 560미터, 다목적부두지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53.3초, 동경 128도 47분37.4초의 지점 (가덕도 서쪽 끝 매립지까지)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국립평택검역소	국립평택검역소 대산지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북위 36도59분, 동경 126도20분의 지점 (황금도)으로부터 북위 36도59분59초, 동경 126도26분18초의 지점(화곡리)과 북위 37도03분59초, 동경 126도24분48초(철도) 및 북위 37도, 동경 126도19분12초의 지점(가인서)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태안항	북위 36도52분48초 · 동경 126도11분06초의 지점(정곡두 해안선)으로부터 북위 36도54분30초 · 동경 126도15분24초 지점(민어도)과 북위 36도55분30초 · 동경 126도15분12초 및 북위 36도54분06초 · 동경 126도10분06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포항검역소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공항지소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북위 35도53분38초, 동경 128도39분32초에 위치한 대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국립 동해검역소	국립 동해검역소 속초지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속초항	속초시 동북방 삼각점(△) 36지점(북위 38도12분38초, 동경 128도36분09초)에서 조도 동단을 거쳐 연결한 선안의 해면과 조도 남단에서 북위 38도11분25초5, 동경 128도36분15초5를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양양국제공항		북위38도03분, 동경 128도40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 동해검역소 고성지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		북위 38도33분58초, 동경 128도23분35초에 위치한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동해선철도 남북출입사무소		북위 38도33분55초, 동경 128도23분28초에 위치한 동해선철도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 목포검역소	국립 목포검역소 무안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북위 34도59분, 동경 126도22분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을 형

	공 항 지 소				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국 립 여 수 검 역 소	국 립 여 수 검 역 소 광양 지소	전 라 남 도 광양 시	광양항	북위 34도50분02초, 동경 127도46분32초 의 지점으로부터 북 위 34도55분49초, 동 경 127도48분45초의 지점, 북위 34도55분 49초, 동경 127도40 분의 지점 및 가마 봉(소라면 대포리 뒷산)산정까지의 지 점을 순차적으로 연 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 성하는 해안선으로부 터 폭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경 상 남 도 하동 군	하동항 (하동 화 력 발전 소부두)	북위 34도56분27초, 동경 127도49분48초 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1천미터의 반 경을 가진 원호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 성하는 해안선으로부 터 폭 5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국 립 마 산 검 역 소	국 립 마 산 검 역 소 통영 지소	경 상 남 도 통영 시	통영항	북위 34도49분47초, 동경 128도24분27초 의 지점(당동남쪽 튀 어나온 곳)으로부터 북위 34도49분43초, 동경 128도24분27초 의 지점(당산리 돌단) 을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50분31초, 동경 128도27분01초의 지 점(매일봉)과 북위 34 도49분23초, 동경 128 도26분37초의 지점(진 송말)을 연결한 선안	왼쪽 란의 수역을 형 성하는 해안선으로부 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경 상 남 도 사천 시	삼 천 포 항	의 해면 북위 34도54분55초, 동경 128도05분21초 의 지점(장사발 남단) 으로부터 북위 34도54 분21초, 동경 128도05 분0.25초의 지점(추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 도54분28초, 동경 128 도04분40초의 지점(신 수도 북단 금주갑)을 연결한 선과 동 지점 으로부터 북위 34도54 분17.5초, 동경 128도 03분56초의 지점(장구 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도55분32초, 동경 128도03분27초의 지 점(사천시 대방동 남 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 성하는 해안선으로부 터 폭 4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마 산 검 역 소 거제 지소	경 상 남 도 거제 시	옥포항 북위 34도53분18초, 동경 128도44분06초 지점 말단으로부터 북위 34도53분57초, 동경 128도43분07초 의 말단지점을 연결 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 성하는 해안선으로부 터 폭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장 승 포 항	북위 34도51분37초, 동경 128도44분16초 의 지점으로부터 북 위 34도50분58초, 동 경 128도43분59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 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 성하는 해안선으로부 터 폭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고현항	북위 34도54분39초, 동경 128도35분08초의 지점(다갈암)으로부터 북위 34도55분18초, 동경 128도36분25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제주검역소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공항지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북위 33도30분, 동경 126도29분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79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7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9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9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 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6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6
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 ·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보건연구 사 또는 기록연구사	53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7
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 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8
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
운전서기보	3
보건연구관	7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43
보건연구사	91
보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48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8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9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9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 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6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6
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 ·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보건연구 사 또는 기록연구사	53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7
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 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8
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
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2
운전서기보	3
보건연구관	7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43
보건연구사	91
보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7]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208
일반직 계	20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원	8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 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원	1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 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원	10
사서사무관	1
행정주사·사서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 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0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 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
행정서기·사서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공 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보건연구원	70
보건연구사	88

[별표 7의 2]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210
일반직 계	2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원	8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 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원	1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 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원	10
사서사무관	1
행정주사·사서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 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0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 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
행정서기·사서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공 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보건연구원	70
보건연구사	88

[별표 8]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관련)

총계	710
일반직 계	7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2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2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 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 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9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9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 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 는 보건연구사	100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3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 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 보 또는 시설주사보	156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간호 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22

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71
운전서기보	6
방호서기보	2
보건연구관	29
보건연구사	23
보건운영서기보	5

[별표 9]

국립결핵병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본문 관련)

1. 국립마산병원

총계	116
일반직 계	116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4급 이하	115

2. 국립목포병원

총계	97
일반직 계	97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4급 이하	96

[별표 10]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1조 관련)

1. 질병관리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위기대응분석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역량 개발담당관	8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3) 위기대응분석관 역학조사분석 담당관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4)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연구담 당관	10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	2024년 3월 31일까지
5) 종합상황실	17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8급 7명)	2024년 3월 31일까지
6)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1명 (4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7) 감염병위기대응국 의료대응지원과	3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8)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	10명	2024년 3월 31일까지

분석과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9) 의료안전예방국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0) 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관리과	7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1)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2)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3)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4) 만성질환관리국 손상예방관리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 관리과	6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 러스연구센터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3)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개발지원센터	(고위공무원단 1명)	
4) 국립감염병연구소 만성바이러스연구과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5) 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	7명 (연구관 4명, 연구사 3명)	2024년 3월 31일까지
6) 국립감염병연구소 인수공통감염연구과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7) 국립감염병연구소 백신연구개발총괄과	10명 (5급 1명, 7급 1명, 연구관 4명, 연구사 4명)	2024년 3월 31일까지
8) 국립감염병연구소 병원체자원관리과	7명 (연구관 3명, 연구사 4명)	2024년 3월 31일까지
9) 국립감염병연구소 백신임상연구과	7명 (연구관 3명, 연구사 4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0)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8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1)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5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2)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조사과	9명 (4급 1명, 6급 1명, 7급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3)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	5명	2024년 3월 31일까지

대응과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14)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5)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 조사과	7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6)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 대응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7)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3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8)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 조사과	7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9)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 대응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0)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진단 분석과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1) 경북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 조사과	7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2024년 3월 31일까지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2)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 대응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3)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4)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 조사과	7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53명 (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1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2조 관련)

1. 제3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수의사무관	1

2. 제32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2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국립검역소) ① (생 락)	제23조(국립검역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서무 과 · 검역1과 및 검역2과를 두 고,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며, 국립인천검 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에 검역 과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의 서무과장은 <u>과학기술서기관</u> <u>·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u> <u>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u> <u>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u> <u>·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u>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검역1과 장 및 검역2과장은 <u>과학기술서</u> <u>기관 · 서기관</u> 또는 보건연구관 으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서무과장 · 검역과장, 국립인천 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의 검 역과장은 <u>공업사무관 · 보건사</u> <u>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u> <u>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u> <u>·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u>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 ----- ----- ----- ----- <u>과학기술서기관 ·</u> <u>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u> <u>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u> <u>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관 ·</u> <u>전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u> <u>복지사무관</u> ----- ----- ----- ----- ----- ----- <u>공업사무관 · 보건사무</u> <u>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u> <u>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관 ·</u> <u>전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u> <u>복지사무관</u> 또는 보건연구관으

③ ~ ⑤ (생 략) 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① (생 략) ② 지소에는 지소장 1명을 두 되, 지소장은 <u>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 관·통계사무관</u> 또는 보건연구 관으로 보한다. ③ (생 략) 제32조(한시정원) ①·② 삭 제 ③ <u>의약품·물자 등의 수급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 청에 두며, 별표 12의 정원 중 1 명(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 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 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1명)은 식품의 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 원해야 한다.</u> ④·⑤ (생 략)	<u>로 보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① (현 행과 같음) ② ----- ----- <u>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 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 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u> -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한시정원) <u><삭 제></u> ④·⑤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81	479	△2
일반직 계	480	478	△2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7	56	△1
행정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2	1	+1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7	46	△1
·	·	·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2	21	△1
·	·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83</u>	<u>481</u>	△2
일반직 계	<u>482</u>	<u>480</u>	△2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 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57</u>	<u>56</u>	△2
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二	<u>1</u>	+1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u>47</u>	<u>46</u>	△1
·	·	·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2	<u>21</u>	△1
·	·		

[별표 7]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10</u>	<u>208</u>	△2
일반직 계	<u>210</u>	<u>208</u>	△2
•	•	•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 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u>11</u>	<u>10</u>	△1
•	•	•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보건 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 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 보 또는 시설주사보	<u>10</u>	<u>10</u>	-
보건연구사	<u>89</u>	<u>88</u>	△1
•	•	•	

[별표 7의2]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12</u>	<u>210</u>	△2
일반직 계	<u>212</u>	<u>210</u>	△2
·	·	·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 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u>11</u>	<u>10</u>	△1
·	·	·	
행정주사보· 사서주사보 ·보건 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 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 보 또는 시설주사보	<u>10</u>	<u>10</u>	-
보건연구사	<u>89</u>	<u>88</u>	△1
·	·	·	

[별표 8]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710</u>	<u>710</u>	-
일반직 계	<u>710</u>	<u>710</u>	-
·	·	·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u>14</u>	<u>13</u>	△1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서기· 의료기술서기·간호서기·전산 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221</u>	<u>222</u>	+1
·	·	·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 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69</u>	<u>71</u>	+2
·	·	·	
<u>위생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u>기계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별표 9]

국립결핵병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총계			<u>118</u>		<u>116</u>	△2	
일반직	계		<u>118</u>		<u>116</u>	△2	
		.		.	.		
4급	이하		<u>117</u>		<u>115</u>	△2	
		.		.	.		
총계			<u>98</u>		<u>97</u>	△1	
일반직	계		<u>98</u>		<u>97</u>	△1	
		.		.	.		
4급	이하		<u>97</u>		<u>96</u>	△1	